

문) 외국인이 한국의 검사, 판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 중 외국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외국 학력은 어떻게 국내학력과 비교합니까?

답)

- 외국인 역시 한국의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거칠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가능함. 다만, 검사, 판사로는 임용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위 법학과목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국내교육기관에서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 따라서 국내학력자·외국학력자를 불문하고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가능하며, 외국학력자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문) 검사, 판사, 변호사도 재직교육을 받으니까?

답)

-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는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연수원에서 재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

문) 사법시험 과목문제는 그 범위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또 참고서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발표합니까?

답)

- 사법시험 과목 중 제1차시험 선택과목은 그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제1차 필수과목 및 제2차 과목은 별도 범위 또는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해당 과목의 저명 교과서, 기출문제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공부범위 및 수준을 수험생 스스로 정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별도로 공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음

문) 사법시험을 담당하는 고시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또 대우는 어떻습니까?

답)

○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결정,
합격자 결정 등을 위하여 별도로 「사법시험 관리위
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현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구성 : 법무부장관(위원장),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
체 추천 1인 및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총 13인)

문) 사법시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시위원이 시험 전에 문제를 출제합니까? 시험문제 출제팀을 구성합니까?

답)

- 사법시험에서는 사전에 해당 과목 전공교수들에게 문제출제를 의뢰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함
- 이후 실제 시험문제 출제단계에서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출제팀을 구성하며, 위 출제팀에서는 합숙출제를 통해 문제은행에 수록된 문제들 중 일부를 선정, 복합·변형하여 실제 시험문제를 출제함

문) 사법시험은 컴퓨터에 시험문제를 저장합니까?
어떻게 시험문제의 보안을 유지합니까?

답)

- 사법시험 문제는 특정 장소에서 출제위원 및 행정 지원팀이 수일간 합숙출제과정을 거쳐 출제됨
- 합숙출제는 엄중한 보안지침에 따라 내외부간 물건 반출입 및 인적왕래가 통제되고, 내외부간 통신 역시 원천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등 시험문제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

문) 사법시험은 시험이 끝난 후 문제와 답안을 발표합니까? 시험응시자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 시험종료후 제1차, 제2차시험 모두 사법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barexam)상에 시험문제를 공개함
- 한편 제1차시험의 경우, 시험종료후 가답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정 기간을 두어 위 가답안에 대한 시험응시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함
- 이의신청 접수완료 이후, 출제위원들로 구성된 답안 확정회의에서 응시자들의 이의사항의 당부를 검토하고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함
- 한편 제2차시험의 경우, 합격자발표 이후 불합격자에 한하여 수험생 본인의 답안 열람의 기회를 제공

문) 신체장애인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신체장애자의 합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답)

○ 전맹인, 약시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원서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면 시험응시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편의제공내역

장애유형		편의제공내역
시각장애	전맹인 (교정시력 0.04 이하, 시야 10도 이내)	- 점자 문제지,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 (1차시험 2배, 2차시험 1.5배)
	약시자 (교정시력 0.04 초과 0.3 미만)	- 문제지 확대 - 시험시간 연장 (1차시험 1.5배, 2차시험 1.33배)
지체장애	손사용에 크게 지장이 있는 자	- 매교시별 시험시간 20분 연장

○ 시험시행 이래 최초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서 전맹인 응시자 1인이 최종합격함

문) 미래발전 방향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

- 현재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시급한 과제임
- 변호사시험은 기존 사법시험의 틀을 벗어나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문) 관련 법규와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답)

○ 관련 법령 (별첨)

- 사법시험 관련 : 사법시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사법시험 관련 통계자료 (별첨)

-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통계
-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통계
-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 및 통계자료



2009. 11.

법조인력 과

목 차

- I. 사법시험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II.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III. 변호사시험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IV.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 제2차 · 최종합격자 통계

사법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법시험실시기관)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장·실시한다.

제3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6. 3. 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8조(시험방법) ①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한다.

③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1.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제9조(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10조(시험의 일부면제) ①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②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3차시험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응시원서와 함께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다만, 시험과목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의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 ②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법무부장관은 제3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험위원) ①시험위원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시험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호별로 1인을 지명한다.
1.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2. 법학교수(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및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법학교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6.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차 시험중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시험점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경비(警備)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군법무관임용시험)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인원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 <제6436호,2001.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제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하여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2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중 "司法試驗令"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②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司法試驗令"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③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司法試驗令"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부칙 <제7893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법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 제2조 (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시험과목·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및 출원절차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6.10.26>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사항 등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 제3조 (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의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 ③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 제4조 (시험과목)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 ④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 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 자를 정한다. 이 경우 민법과목의 만점은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로 한다. <개정 2005.11.1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 ④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5점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⑤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합격증명서의 발급) ①법무부장관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6.10.26>
- 제7조 (시험위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을 제외한다)당 3인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제8조 (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응시수수료 납부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 도록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7181호,2001.3.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내지 제9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사법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사법시험령 제2조, 제3조, 제7조 내지 제22조 및 별표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 제3조 (어학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어학과목은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독어·불어·서반아어·일어·중국어 및 러시아어중 1과목으로 한다.
- 제4조 (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지적재산권법의 시험실시범위는 제4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 제5조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및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학과목을 포함하여 매과목 4할 이상 및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어학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한다.
- 제6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사법시험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8160호,2003.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1차시험과목 경제법의 출제범위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사법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사법시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적재산권법란의 출제범위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내지 <20>생략

부칙 <제19125호,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11호,2006.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0호,200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플 IBT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토플 IBT시험에서 별표 4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어과목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제법란의 출제범위란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⑥내지 <16>생략

제8조 생략

[별표 1]

제1차시험과목(제4조제1항관련)

선택과목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중 1과목
어학과목	영어

[별표 2] <개정 2007.3.27>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제4조제2항관련)

과목	출제범위
제1차 시험과목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한다.

[별표 3] <개정 2007.1.5>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제4조제4항관련)

구분	내용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픽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텡스 (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07.1.5>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조제4항관련)

토플(TOEFL)			토픽(TOEIC)	텡스(TEPS)
PBT	CBT	I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9>

제2조 (응시원서의 제출) ①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9>

1. 응시원서 제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
2. 삭제 <2006.10.26>
3. 삭제 <2006.10.26>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류 1부(「사법시험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응시원서의 접수) ①법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응시원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2통 이상의 응시원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시원서를 분산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의 발급 등) ①「사법시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4.29, 2006.10.26>

1. 「사법시험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
2. 그밖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는 취득기관, 각 교과목의 명칭, 학점의 수 및 법학과목 학점의 합계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또는 시험의 면제신청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응시자준수사항) ①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니고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응시자는 시험시간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응시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자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자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자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답안지 제출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④법무부장관은 해당 과목이 영점으로 처리된 자와 응시하지 아니한 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과목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2 (제2차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①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당해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frac{\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5 + \text{전 과목의 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②영 제5조제2항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라 함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과목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과목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전 과목 총득점"이라 함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총득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29]

제7조의3 (제1차시험 선택과목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①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sqrt{(\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② 영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이란 조정 전의 응시자의 선택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과목 총득점"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제8조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6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②영 제8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험의 경우에는 3만원, 군법무관임용시험의 경우에는 1만원을 말한다.

제9조 (성적공개) ① 「사법시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적공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제510호,2001.12.4>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0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0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0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전공			
취득기관	법학과목명	학점	취득기관	법학과목명	학점
			취득학점	계	
사법시험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한국교육개발원장) [인]					
【취득기관관 기재요령】					
1.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과목 : 학교명					
2. 독학시험에 합격한 과목 : 독학시험명					
3.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한 학습과정 : 평생교육시설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개정 2008.2.29>
-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8.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8.2.29>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인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 중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16조(교원 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17조(물적 기준)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제10조제3호·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학점) ①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

- 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시설·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 제23조(학생선발)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⑤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편입학) ①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6조(학생구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절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시행일 2009.1.1]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3인

[시행일 2009.1.1]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시행일 2009.1.1]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 나.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 다.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시행일 2009.1.1]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제33조(평가기준) ①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제34조(사실조사 등)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9.1.1]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대학에 통지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9.1.1]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9.1.1]

제5장 보칙

제38조(시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9조(감축조치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40조(인가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폐쇄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①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7조, 제10조제3호, 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3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 제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41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8544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㉞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인가 절차)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제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3조 (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제4조 (변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생정원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3. 변경 연월일

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3. 공인회계사 1명
4.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④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교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11조 (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점)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제17조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

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 현황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 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재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제19조 (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20302호, 2007.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5호·제2항 전단·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조,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102> 까지 생략

변호사시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9747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 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을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출원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1706호,2009.8.28>

이 영은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선택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

[별표 2]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법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논술형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frac{\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5 + \text{전 과목의 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있어서는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40퍼센트를 각 응시자의 최종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frac{\text{응시자의 점수}-\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2.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라 함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라 함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만원을 말한다.

제9조(성적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는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적공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 성적분포

득 점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점유율(%)	인원	비율(%)	점유율(%)
총계	17,829	100	12,004	67.33	100	5,825	32.67	100
350 이상	0	0.00	0	0.00	0.00	0	0.00	0.00
300이상 350미만	33	0.19	22	0.12	0.18	11	0.06	0.19
340 점대	0	0.00	0	0.00	0.00	0	0.00	0.00
330 점대	0	0.00	0	0.00	0.00	0	0.00	0.00
320 점대	0	0.00	0	0.00	0.00	0	0.00	0.00
310 점대	7	0.04	4	0.02	0.03	3	0.02	0.05
300 점대	26	0.15	18	0.1	0.15	8	0.04	0.14
250이상 300미만	2,659	14.91	1,815	10.18	15.12	844	4.73	14.49
290 점대	100	0.56	57	0.32	0.47	43	0.24	0.74
280 점대	257	1.44	170	0.95	1.42	87	0.49	1.49
270 점대	504	2.83	326	1.83	2.72	178	1	3.06
260 점대	816	4.58	563	3.16	4.69	253	1.42	4.34
250 점대	982	5.51	699	3.92	5.82	283	1.59	4.86
200이상 250미만	5,086	28.53	3,583	20.1	29.85	1,503	8.43	25.8
240 점대	1,189	6.67	858	4.81	7.15	331	1.86	5.68
230 점대	1,139	6.39	771	4.32	6.42	368	2.06	6.32
220 점대	1,033	5.79	745	4.18	6.21	288	1.62	4.94
210 점대	902	5.06	637	3.57	5.31	265	1.49	4.55
200 점대	823	4.62	572	3.21	4.77	251	1.41	4.31
150이상 200미만	3,483	19.54	2,335	13.1	19.45	1,148	6.44	19.71
190 점대	727	4.08	500	2.8	4.17	227	1.27	3.9
180 점대	734	4.12	500	2.8	4.17	234	1.31	4.02
170 점대	673	3.77	442	2.48	3.68	231	1.3	3.97
160 점대	676	3.79	444	2.49	3.7	232	1.3	3.98
150 점대	673	3.77	449	2.52	3.74	224	1.26	3.85
100이상 150미만	4,019	22.54	2,634	14.77	21.94	1,385	7.77	23.78
140 점대	658	3.69	439	2.46	3.66	219	1.23	3.76
130 점대	797	4.47	537	3.01	4.47	260	1.46	4.46
120 점대	720	4.04	474	2.66	3.95	246	1.38	4.22
110 점대	928	5.21	604	3.39	5.03	324	1.82	5.56
100 점대	916	5.14	580	3.25	4.83	336	1.88	5.77
100 미만	2,549	14.3	1,615	9.06	13.45	934	5.24	16.03

■ 연령별/성별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2,511	100.00	1,709	68.06	802	31.94
18 미만	0	0.00	0	0.00	0	0.00
18이상 20미만	1	0.04	1	0.06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1	0.04	1	0.06	0	0.00
20이상 25미만	489	19.48	250	14.64	239	29.8
20	3	0.12	3	0.18	0	0.00
21	36	1.43	23	1.35	13	1.62
22	121	4.82	77	4.51	44	5.49
23	141	5.62	56	3.28	85	10.6
24	188	7.49	91	5.33	97	12.09
25이상 30미만	1,068	42.53	663	38.79	405	50.5
25	204	8.13	107	6.26	97	12.09
26	245	9.76	149	8.72	96	11.97
27	244	9.72	155	9.07	89	11.1
28	200	7.97	135	7.9	65	8.1
29	175	6.97	117	6.85	58	7.23
30이상 35미만	609	24.26	484	28.34	125	15.59
30	146	5.82	98	5.74	48	5.99
31	135	5.38	102	5.97	33	4.11
32	112	4.46	96	5.62	16	2.0
33	109	4.34	97	5.68	12	1.5
34	107	4.26	91	5.33	16	2
35이상 40미만	256	10.2	229	13.41	27	3.37
35	68	2.71	59	3.45	9	1.12
36	65	2.59	62	3.63	3	0.37
37	49	1.95	45	2.63	4	0.5
38	39	1.55	33	1.93	6	0.75
39	35	1.39	30	1.76	5	0.62
40이상 45미만	69	2.75	66	3.86	3	0.37
40	21	0.83	21	1.23	0	0.00
41	15	0.60	13	0.76	2	0.25
42	15	0.60	15	0.87	0	0.00
43	10	0.40	10	0.59	0	0.00
44	8	0.32	7	0.41	1	0.12
45이상 50미만	15	0.6	12	0.7	3	0.37
45	2	0.08	2	0.11	0	0.00
46	6	0.24	6	0.35	0	0.00
47	5	0.20	3	0.18	2	0.25
48	1	0.04	0	0.00	1	0.12
49	1	0.04	1	0.06	0	0.00
50이상	4	0.16	4	0.23	0	0.00
51	1	0.04	1	0.06	0	0.00
52	1	0.04	1	0.06	0	0.00
53	1	0.04	1	0.06	0	0.00
55	1	0.04	1	0.05	0	0.00

■ 학력별/성별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구 분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비율(%)		
					출원자 대 비	응시자 대 비	합격자 대 비
총계	계	21,082	17,829	2,511	100.00	100.00	100.00
	남자	14,527	12,004	1,709	68.91	67.33	68.06
	여자	6,555	5,825	802	31.09	32.67	31.94
대학원재학이상	계	2,133	1,745	249	10.12	9.79	9.92
	남자	1,669	1,347	200	7.92	7.56	7.96
	여자	464	398	49	2.2	2.23	1.95
대학졸업	계	9,036	7,439	1,332	42.86	41.72	53.05
	남자	6,473	5,203	915	30.7	29.18	36.44
	여자	2,563	2,236	417	12.16	12.54	16.61
대학재.중퇴	계	9,804	8,587	926	46.5	48.16	36.88
	남자	6,292	5,401	590	29.85	30.29	23.50
	여자	3,512	3,186	336	16.66	17.87	13.38
3년제이하 대학	계	34	19	3	0.16	0.11	0.12
	남자	27	18	3	0.13	0.10	0.12
	여자	7	1	0	0.03	0.01	0.00
고등학교졸업이하	계	75	39	1	0.36	0.22	0.04
	남자	66	35	1	0.31	0.20	0.04
	여자	9	4	0	0.04	0.02	0.00

■ 학력별/법학전공별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학 력	합 격 자		전 공		비 전 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2,511	100.00	1,937	77.17	574	22.86
대학원 재학 이상	249	9.92	170	6.77	79	3.15
대학교 졸업	1,332	53.05	962	49.66	370	14.74
대졸이상 계	1,581	62.96	1,132	45.1	449	17.88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926	36.88	805	32.07	121	4.82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3	0.12	0	0.00	3	0.12
고등학교 졸업.중퇴	1	0.04	0	0.00	1	0.04
학력미상	0	0.00	0	0.00	0	0.00
대졸미만 계	930	37.05	805	32.07	125	4.98

2008년 시행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통계

□ 제2차시험 합격자 현황

○ 연령별·성별 현황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621	61.79	384	38.21
18 미만	0	0.00	0	0.00	0	0.00
18이상 20미만	0	0.00	0	0.00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0	0.00	0	0.00	0	0.00
20이상 25미만	187	18.61	100	16.10	87	22.66
20	0	0.00	0	0.00	0	0.00
21	4	0.40	4	0.64	0	0.00
22	22	2.19	15	2.42	7	1.82
23	74	7.36	38	6.12	36	9.38
24	87	8.66	43	6.92	44	11.46
25이상 30미만	539	53.63	315	50.72	224	58.33
25	95	9.45	44	7.09	51	13.28
26	138	13.73	70	11.27	68	17.71
27	127	12.64	76	12.24	51	13.28
28	102	10.15	71	11.43	31	8.07
29	77	7.66	54	8.70	23	5.99
30이상 35미만	210	20.90	155	24.96	55	14.32
30	50	4.98	28	4.51	22	5.73
31	52	5.17	37	5.96	15	3.91
32	44	4.38	36	5.80	8	2.08
33	32	3.18	27	4.35	5	1.30
34	32	3.18	27	4.35	5	1.30
35이상 40미만	62	6.17	47	7.57	15	3.91
35	23	2.29	17	2.74	6	1.56
36	14	1.39	10	1.61	4	1.04
37	12	1.19	10	1.61	2	0.52
38	6	0.60	5	0.81	1	0.26
39	7	0.70	5	0.81	2	0.52
40이상 45미만	6	0.60	4	0.64	2	0.52
45이상 50미만	1	0.10	0	0.00	1	0.26
50이상	0	0.00	0	0.00	0	0.00

○ 학력별·성별 현황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점유율	인원	비율	점유율
총 계	1005	100.00	621	61.79	100.00	384	38.21	100.00
대학원 재학 이상	132	13.13	94	9.35	15.14	38	3.78	9.90
대학교 졸업	488	48.56	293	29.15	47.18	195	19.40	50.78
대졸이상 계	620	61.69	387	38.51	62.32	233	23.18	60.68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383	38.11	232	23.08	37.36	151	15.02	39.32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0	0.00	0	0.00	0.00	0	0.00	0.00
고등학교 졸업.중퇴	2	0.20	2	0.20	0.32	0	0.00	0.00
대졸미만 계	385	38.31	234	23.28	37.68	151	15.02	39.32

○ 학력별·법학전공별 현황

구 분	전체		법학전공		법학비전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817	81.29	188	18.71
대학원 재학 이상	132	13.13	105	10.45	27	2.69
대학교 졸업	488	48.56	376	46.02	112	11.14
대졸이상 계	620	61.69	481	47.86	139	13.83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383	38.11	336	33.43	47	4.68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0	0.00	0	0.00	0	0.00
고등학교 졸업.중퇴	2	0.20	0	0.00	2	0.20
대졸미만 계	385	38.31	336	33.43	49	4.88

○ 1차시험 면제·비면제 현황

구 분	전체		1차시험 면제		1차시험 비면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767	76.32	238	23.68

○ 출신대학별 현황

출신대학명	합격인원	출신대학명	합격인원
서울대학교	274	인하대학교	4
고려대학교	183	숙명여자대학교	3
연세대학교	105	원광대학교	3
성균관대학교	76	광운대학교	2
이화여자대학교	64	송실대학교	2
한양대학교	53	홍익대학교	2
중앙대학교	26	육군사관학교	2
부산대학교	22	영남대학교	2
서강대학교	20	강원대학교	1
전남대학교	19	교육대학교	1
경희대학교	15	한동대학교	1
경북대학교	14	충북대학교	1
한국외국어대학교	13	청주대학교	1
경찰대학	13	안동대학교	1
건국대학교	12	성신여자대학교	1
동국대학교	12	경상대학교	1
아주대학교	11	인천대학교	1
전북대학교	8	동의대학교	1
충남대학교	7	대구대학교	1
동아대학교	6	경기대학교	1
국민대학교	5	기타 4년제대학	3
서울시립대학교	5	기타	2
단국대학교	5	총계	1,005

2008년 시행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 최종합격자 현황

○ 연령별·성별 현황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총계	1,005	100.00	623	61.99	382	38.01
18 미만	0	0.00	0	0.00	0	0.00
18이상 20미만	0	0.00	0	0.00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0	0.00	0	0.00	0	0.00
20이상 25미만	187	18.61	101	16.21	86	22.51
20	0	0.00	0	0.00	0	0.00
21	4	0.40	4	0.64	0	0.00
22	22	2.19	15	2.41	7	1.83
23	73	7.26	38	6.10	35	9.16
24	88	8.76	44	7.06	44	11.52
25이상 30미만	538	53.53	315	50.56	223	58.38
25	93	9.25	43	6.90	50	13.09
26	139	13.83	71	11.40	68	17.80
27	130	12.94	79	12.68	51	13.35
28	100	9.95	69	11.08	31	8.12
29	76	7.56	53	8.51	23	6.02
30이상 35미만	211	21.00	156	25.04	55	14.40
30	50	4.98	28	4.49	22	5.76
31	50	4.98	36	5.78	14	3.66
32	44	4.38	36	5.78	8	2.09
33	34	3.38	28	4.49	6	1.57
34	33	3.28	28	4.49	5	1.31
35이상 40미만	62	6.17	47	7.54	15	3.93
35	23	2.29	17	2.73	6	1.57
36	14	1.39	10	1.61	4	1.05
37	12	1.19	10	1.61	2	0.52
38	6	0.60	5	0.80	1	0.26
39	7	0.70	5	0.80	2	0.52
40이상 45미만	6	0.60	4	0.64	2	0.52
45이상 50미만	1	0.10	0	0.00	1	0.26
50이상	0	0.00	0	0.00	0	0.00

○ 학력별·성별 현황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점유율	인원	비율	점유율
총 계	1,005	100.00	623	61.99	100.00	382	38.01	100.00
대학원 재학 이상	131	13.03	94	9.35	15.09	37	3.68	9.69
대학교 졸업	490	48.76	295	29.35	47.35	195	19.40	51.05
대졸이상 계	621	61.79	389	38.71	62.44	232	23.08	60.73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383	38.11	233	23.18	37.40	150	14.93	39.27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0	0.00	0	0.00	0.00	0	0.00	0.00
고등학교 졸업·중퇴	1	0.10	1	0.10	0.16	0	0.00	0.00
대졸미만 계	384	38.21	234	23.28	37.56	150	14.93	39.27

○ 학력별·법학전공별 현황

구 분	전체		법학전공		법학비전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813	80.90	192	19.10
대학원 재학 이상	131	13.03	103	10.25	28	2.79
대학교 졸업	490	48.76	374	46.00	116	11.54
대졸이상 계	621	61.79	477	47.46	144	14.33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383	38.11	336	33.43	47	4.68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0	0.00	0	0.00	0	0.00
고등학교 졸업·중퇴	1	0.10	0	0.00	1	0.10
대졸미만 계	384	38.21	336	33.43	48	4.78

○ 면제·비면제 현황

구 분	전체		1차시험 면제		1차시험 비면제		1·2차시험 면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757	75.32	237	23.58	11	1.10

○ 출신대학별 현황

(※ 본 자료는 응시자 본인의 응시원서 기재 기준임)

출신대학명	합격인원	출신대학명	합격인원
서울대	275	원광대	4
고려대	182	숙명여대	3
연세대	104	기타4년제대학	
성균관대	77	광운대	2
이화여대	63	송실대	
한양대	53	홍익대	
중앙대	26	육군사관학교	
부산대	22	영남대	
서강대	21	강원대	1
전남대	19	교육대	
경희대	15	한동대	
경찰대학	14	충북대	
경북대	13	청주대	
건국대	12	조선대	
동국대		안동대	
한국외대		성신여대	
아주대	11	경상대	
전북대	7	인천대	
충남대		동의대	
동아대	6	대구대	
국민대	5	경기대	
인하대		기타	
서울시립대		총 계	
단국대			

말씀 자료

1. 인사 말씀

- 대만 정부 양조상 고선부 부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의 대한민국 법무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바쁘신 방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부를 방문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선부 부장 답례 말씀 예정)

2. 방한 관련

- 고선부 부장님께서서는 한국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지
-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대한변협,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을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힘드실 테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람

3. 방한 목적 관련 (대만의 법조인 선발 제도 개편)

- 대만은 2011년부터 검사, 판사 및 변호사 시험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들었음 (시험과목, 인원 선발 기준 등 변경 예정)
- 그리고, 2014년부터는 검사, 판사 및 변호사시험을 통합한 삼합일(3합1) 고시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들었음

※ 현재 검·판사는 공무원인원특정고시, 변호사는 전문고시제도를 통해 선발
- 고시제도 개편을 계획 중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4. 우리나라의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제도 도입 배경 소개 (대만 측 관심 의제)

가. 사법시험 제도

- 현재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크게 법학교육, 선발 시험 그리고 연수제도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법학교육은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법조인 선발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을 통하여 실시되며, 선발된 자들에 대한 실무연수는 사법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사법시험은 선택형 시험인 1차 시험, 논술형 시험인 2차 시험, 구술 면접시험인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사법연수원은 2년 과정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은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산한 성적을 기준으로 자신의 적성에 따라 검사, 판사 또는 변호사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됨
- 금년에는 약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선발될 예정됨

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

-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두루 갖춘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20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9. 3.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음

- 로스쿨 제도는 '비법학 학부 교육,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교육(실무교육 포함), 변호사시험'의 구조를 골자로 하며,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 로스쿨의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6학기로서, 수료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됨

다. 변호사시험 제도

-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 마련을 위하여 변호사시험법을 입안하였으며, 위 법안은 2009. 4.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음
- 위 법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일본과 같은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않음

- 시험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필수과목과 국제법, 경제법 등 7개 선택과목과 법조윤리 시험 등 이고, 사법시험과 달리 1차, 2차, 3차 시험 등 단계의 구분이 없음

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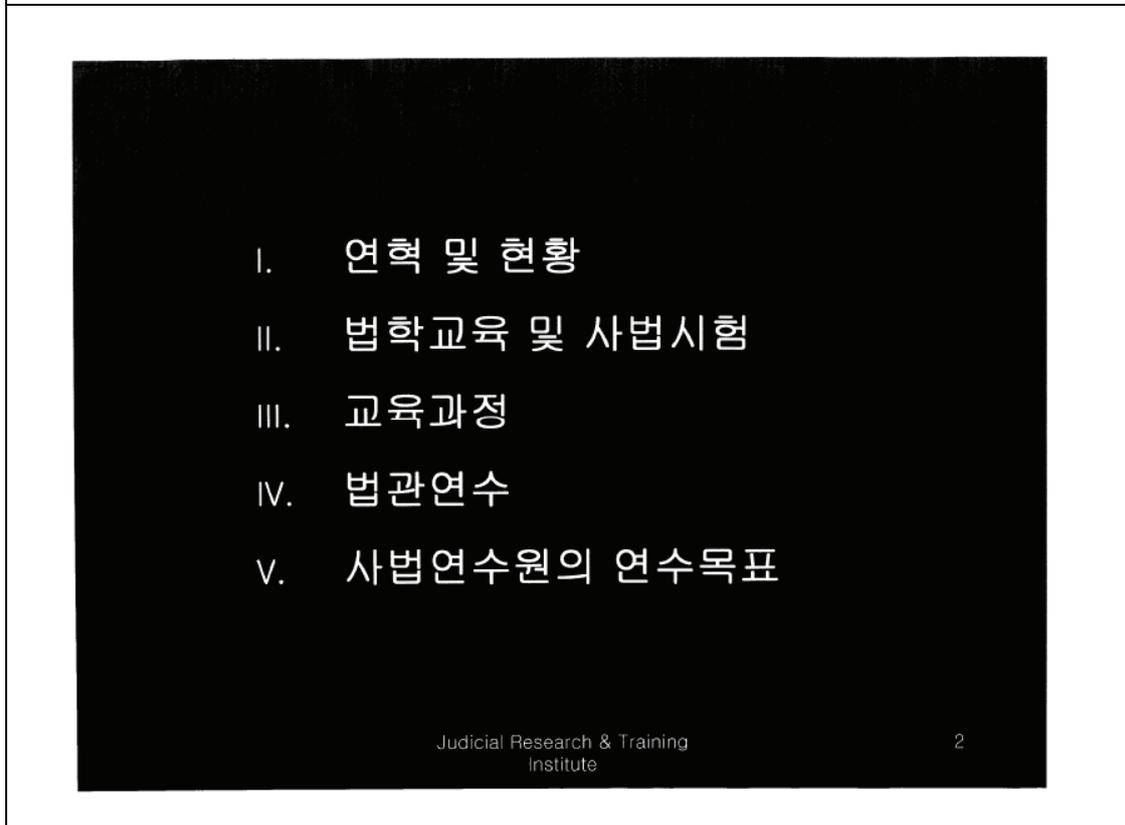
-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 도입 이후에도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유지가 되며, 최초의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양성되게 됨

5. 마무리 말씀

- 저희들의 경험이 대만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마음껏 만끽하시면서 뜻 깊고 보람 있는 방문이 되시기를 바램
- 끝으로, 한국 법무부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방문기간 동안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램
- 감사합니다.

※ **선물(부장: 한지 나비 쌍합 보석함) 및 법무부 영문 소개책자 증정, 사진 촬영**

附錄 6 韓國司法研修院書面答覆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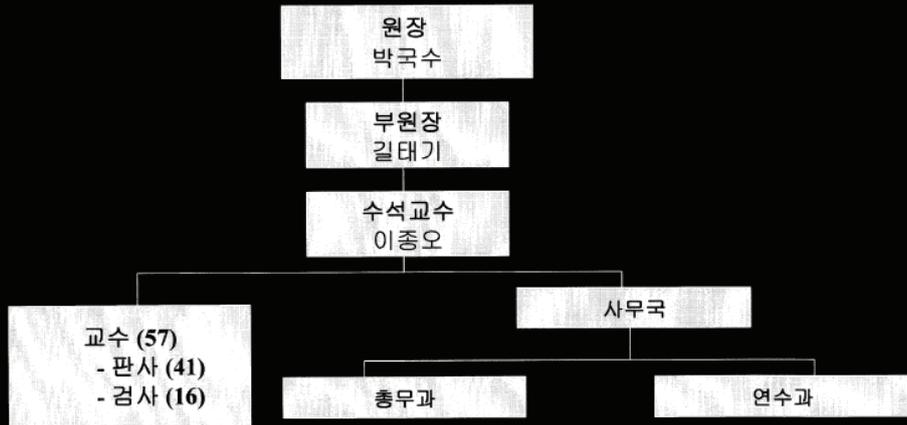
연혁 및 현황



사법연수원 연혁

- 1971년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을 위하여 대법원 산하에 설립
 - 대한민국 유일의 법률실무가 양성기관
- 통산 14,300여 명의 법조인 양성
 - 대한민국 판사의 99%, 검사의 100%, 변호사의 85%
- 1978년부터 신임법관연수 실시
- 1983년부터 법관세미나 실시
- 1979년부터 군법무관시보 위탁교육 실시

사법연수원 조직 현황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5

인원구성

원장	고등법원장	1명
부원장	검사장	1명
수석교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교수 57명	법관 41명	민사교수실 14명
		형사교수실 14명
		변호사교수실 4명
	검사 16명	기획교수실 9명
		경찰교수실 14명
일반직 88명	사무국장 1명	
	총무과 65명	
	연수과 22명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6

시 설 현 황

- 부지면적 : 83,096 m²
- 건물 연면적 : 59,805 m²
- 시설구성
 - 본관동 10층: 교수실 및 사무국
 - 강의동 : 대강의실 6개, 표준 강의실 18개
 - 도서관동 : 534석
 - 기숙사동 : 16층 200실(2인/실)
 - 후생동 : 대강당(1046석), 소강당, 체육관, 식당
 - 법관연수동 및 법관숙소동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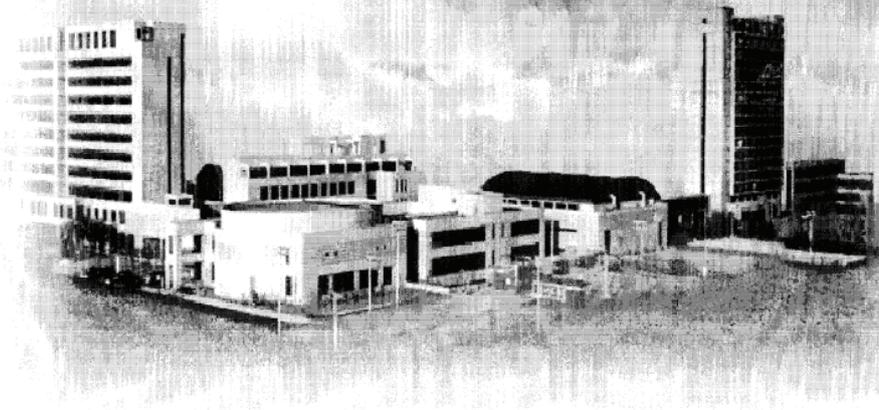
사법연수생의 지위

-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사법연수생이 될 수 있음
-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제39기 1,001명 임명 (여성 348명, 34.76%)
 - 제40기 969명 임명 (여성 379명, 39%)
- 국가공무원의 신분
 - 국고에서 소정의 급여 지급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8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이전의 법학교육

- 대학원 단계가 아닌 학부 단계에서 4년간 이론 중심의 법학교육
- 법과대학 졸업자가 아니어도 사법시험 응시 가능
-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도입될 예정 - 25개 대학, 2,000명 정원
- 2,016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병존 예정

사 법 시 험

- 행정부에 소속된 법무부에서 주관
- 2007년 18,000명이 응시하여 1,011명이 최종 합격
(합격률 : 5.6%)
- 1차 시험 : 선택형
- 2차 시험 : 논술형
 - 1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
- 3차 시험 : 구술시험
 - 2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

사법시험 과목

- 필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영어
- 1차 시험에서의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세법 등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관

-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실무지식과 법조윤리 교육
- 1997년 대학원 형태의 2년-4학기제, 학점제, 전공제 도입
- 전공분야 및 법조윤리 교육의 강화
 - 국제적 경쟁력과 봉사정신,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

교 수 진

- 전임교수 : 1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판사, 검사로 구성
 - 2년 내지 3년 근무 후 다시 법원, 검찰청으로 복귀하여 실무에 종사
- 외부강사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수시로 출강
 -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및 특허, 조세 등 전문분야

교 과 과 정

- 1학기 : 기초과정
 - 주로 기본필수과목을 통하여 실무의 기초지식을 교육
- 2학기 : 발전과정
 - 기본필수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교육
- 3학기 : 임상과정
 -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및 전문분야 실무수습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무능력 체득
- 4학기 : 완성과정
 - 교육성과의 정리 및 평가

전문분야 교육과정

- 8가지의 전공분야
 - 민사법, 기업법, 형사법, 헌법 및 행정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국제거래법, 사회경제법 분야
- 전문분야 실무수습 (1개월)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감사원,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조지워싱턴대, 콜럼비아대 등 113개 기관

법조윤리교육의 강화

- 법조론, 법조윤리론, 법조책임론을 각 1, 2, 4학기 원내수습기간 중 교육
- 합반강의와 소규모 세미나식 수업을 병행
- 인터넷 사이트 “열린마당(www.plaza.or.kr)”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실시
- 의무적인 사회봉사활동
 - 근로봉사(12시간)+ 법률상담봉사(60시간)

실무수습

- 각 2개월씩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에 배치되어 실무수습
- 재판의 심리 및 수사에 참여하고,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장, 소장, 준비서면 등을 직접 작성하면서 이론을 실무에 접목시킴
-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동안 전문기관에서의 대체수습도 허용(UN 등 국제기구, 외국의 법률기관도 허용)

평가

- 각 과정마다 시험을 통하여 평가됨
- 기본적인 학점체계(상대평가)
 - A+(4.3 : 7%), A0(4.0 : 8%), A-(3.7 : 10%)
 - B+(3.3 : 15%), B0(3.0 : 20%), B-(2.7 : 15%),
 - C+(2.3 : 9%), C0(2.0 : 7%), C-(1.7 : 5%),
 - D(1.3 : 4%)
- 평균평점 2.35(1학기) 또는 2.05(2학기) 이하인 경우 다음 학기에 전체 과정을 재수습
- 2회 유급의 경우 면직 처리

개 별 지도

- 지도교수 1인이 24-25명의 연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상담지도
- 매달 4시간 이상의 조별 모임시간 확보
- 토론, 등산, 영화감상,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별 활동 실시

법 관 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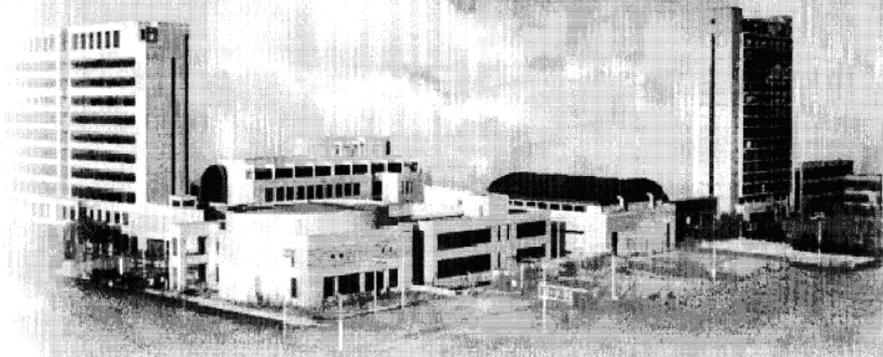
법 관 연 수

- 경력별 연수
 - 모든 판사가 최소 5년에 1회 이상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
- 분야별 연수
 - 형사법, 조세법, 행정법, 파산법 등 특정 분야업무를 처음 맡게 된 법관을 대상으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목적
- 주제별 연수
 - 실무상 쟁점이 많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소주제 중심의 연수
- 세미나
 -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실무편람 편찬

2008년도 법관연수 개요

연수 종류	과정 수	연수 인원
경력별 연수	신임법관 연수 등 11개 과정	589
분야별 연수	형사실무법관 연수 등 10개 과정	560
주제별 연수	기업회계의 이해 등 12개 과정	435
세미나	가사재판장세미나 등 8개 과정	343
합계	41개 과정	1,927

사법연수원의 연수 목표



사법연수원의 연수 목표

-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전문 법조인의 양성
- 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의 양성
- 21세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적인 지도자 양성

감사합니다

사범연수원

한국의 사법연수제도 소개

2008. 9. 23.

사법연수원 교수 유해용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사법연수원의 주요업무

- 사법연수생수습 :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
- 법관연수 : 법관에 대한 계속 교육
- 기타 연수 : 군법무관시보 위탁교육,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사법연수원의 위상

- 대법원 산하의 대한민국 유일의 법조실무가 양성기관
- 사법연수원에서 배출한 법조인은 통산 13,300여 명
- 대한민국 판사의 99%, 검사의 100%, 변호사의 85%가 사법연수원 수료자
- 법률 실무 위주 교육 : 법률이론 + 소송절차 연습 + 법률 서면 작성 연습(원내 임상교육) + 각 분야 실무수습(원외 임상교육)

3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사법연수원과 미국의 로스쿨 비교

구분	사법연수원	미국 로스쿨
기본 시스템	국가 독점체제	민간 자율 경쟁체제
교육 목표	판사·검사 + 변호사 양성	변호사 양성
교육 내용	법률실무 교육 위주	법률이론 교육 위주
교육 방향	표준형/획일성	개방형/다양성
교과목 구성	공통 필수 과목 다수	선택 과목 다수
교수 요원	현직 판사·검사 중심	전문 교수 중심

4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천과정

법조인 양성제도	사법관시보제도	사법대학원 제도	사법연수원제도
시행기간	1945년~1961년	1962년~1970년	1971년~현재
성격		서울대학교 부설	대법원 산하

5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대학원체제로의 전환

-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1995년에 「법률서비스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세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원의 개편방안 마련
 - 대륙식 법조인 양성제도에 미국식 로스쿨 교육방식을 접목
 - 학기제와 학점제 실시
 - 변호사 실무교육의 확대
 - 전문분야 교육 강화
 - 직업윤리 교육 강화
- 1997년에 입소한 28기 연수생부터 개편된 연수제도 시행
- 2002년 일산으로 이전하면서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 개막

6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에 따른 변화

- 2009년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하면, 과도기적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당분간 병존
- 2011년부터 사법연수생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다가 2019년 이후에는 연수생 수습 기능 상실 예정

7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법학전문대학교 출범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미래 역할

- 법관연수 확대·강화
- 신규 변호사 교육 및 경력 변호사 계속 교육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
- 행정부 법무담당관, 군법무관 등에 대한 위탁교육
- 예방법학 내지 교양법학 프로그램 신설
- 국제사법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법관 교육과정 개설
-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에 관한 장기적·학술적 연구

8

사법연수생 수습

◆ 사법연수생의 교육 목표

- 전문 직업교육에 의한 숙련된 실무법조인(법관·검사·변호사)의 양성
- 21세기와 세계화·국제화에 대비한 전문법조인의 양성
- 전인격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공익법조인의 양성
- 선진 일류국가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할 민주적 지도자의 양성

9

사법연수생 수습

◆ 교육의 기본방향

- 현행 재판실무와 부합하는 충실한 기본실무교육
-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의 강화
- 전문분야교육의 심화
- 변호사실무교육의 강화
- 국제경쟁력 강화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강화

10

사법연수생 수습

◆ 교수진

- 전임교수 법관 43명, 검사 16명 총 59명/일반직원 90명
- 14개 반으로 나누어 부장판사 교수 2인과 부장검사 교수 1인 각각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를 전담 교육
- 민사변호사실무 및 형사변호사실무 과목은 각각 전임교수(변호사 경력자) 2인과 외부강사(변호사) 12인이 분담하여 교육
- 1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판사와 검사가 전임교수로 2년 내지 3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고 다시 실무로 복귀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강사로서 수시로 출강

11

사법연수생 수습

◆ 사법연수생 현황

기수	입소인원	평균연령	여 성	비법학 전공
34기	972명	29.95세	230명(23.7%)	276명(28.4%)
35기	887명	30.17세	187명 (21.08%)	270명 (30.44%)
36기	987명	29.88세	243명 (24.62%)	246명 (24.92%)
37기	977명	29.24세	309명 (31.63%)	263명 (26.92%)
38기	971명	28.88세	365명 (37.59%)	238명 (24.51%)
39기	1,001명	29.07세	348명 (34.77%)	235명 (23.48%)

12

사법연수생 수습

◆ 연수생 생활지도

- 연수생의 신분
 - 국가공무원 신분
 - 충실의무, 겸직금지의무, 영리행위금지의무 등 부담
 - 국가 예산으로 일정액의 급여 지급
- 반·조 지도반 활동
 - 14개 반 × 3개 조 체제
 - 조별로 민재, 형재, 검찰 교수가 지도교수로서 지도반 활동 담당
 - 인간관계 훈련/효율적인 그룹 활동

13

사법연수생 수습

◆ 교과목 구성

- 2008년에 입소한 39기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 69학점
-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평가과목의 학점은 총 58학점
- 법원·검찰·변호사·전문분야 실무수습 8학점 및 사회봉사연수 3학점은 pass/fail로 평가
- 등급부여 과목의 종류 및 비중

과목	기본 실무과목	일반 법률과목	전공 과목	외국법 등	법조 윤리	실무 수습	교수 지도학점	합계
학점	35	5	4	3	3	4	4	58
비율	60%	9%	7%	5%	5%	7%	7%	100%

14

사범연수생 수습

◆ 1년차 원내교육 시간 배분

수습분야	시간	비율(%)	수습분야	시간	비율(%)
법률실무	412	28.0	행사,지도활동	108	7.3
법률이론강의	184	12.5	자치회	45	3.0
법조윤리	30	2.0	모의재판	32	2.2
사회봉사	82	5.6	자율활동	519	35.3
교양과목	58	3.9			

15

사범연수생 수습

◆ 학기별 · 수습분야별 이수 학점

수 습 분 야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합계	
법률이론	일반법	3	2			5	
	전문 및 특별법	2	2			4	
	외국법 및 법학인접분야	1	2			3	
법률실무	원내 교육	변호사실무 - 민사	3		3	10	
		형사	2		2		
	실무	민사재판실무	5			4	9
		형사재판실무	4			4	8
		검찰실무	4			4	8
	수습	변호사실무수습		3	6		9
		법원실무수습					
검찰실무수습				3		3	
전문분야실무수습							
법조윤리	법조론, 법조윤리론, 법조책임론	1	1		1	3	
	사회봉사연수	3				3	
교수지도		1	1	1	1	4	
계		11	11	10	19	69	
		통합과정 : 18					

10

사범연수생 수습

◆ 학기별 수습기간 및 내용(2008년 39기 기준)

학 기	유 형	수 습 기 간	비 고
1년차 1학기 (5.5개월)	기초과정	2008. 3. 1. ~ 2008. 8. 15.	원내교육
1년차 2학기 (6.5개월)	발전과정	2008. 8. 16.~ 2009. 2. 28.	원내교육 (4.5개월) 및 실무수습(2개월)
2년차 3학기 (6개월)	임상과정	2009. 3. 1. ~ 2009. 8. 31.	실무수습
2년차 4학기 (5개월)	완성과정	2009. 9. 1. ~ 2010. 1. 31.	원내교육

17

사범연수생 수습

◆ 39기 학기별 세부 학사일정

1학기 5.5개월 (2008. 3. 1. ~ 8. 15.)			2학기 6.5개월 (2008. 8. 16. ~ 2009. 2. 28.)								
강의 3½개월(15주)	시험 2주	법률상담봉사 2주 자율학습 5주	강의 3½개월(15주)	시험 2주	자율학습 2.5주	직역별 실무수습 2개월					
3학기 6개월 (2009. 3. 1. ~ 8. 31.)			4학기 5개월 (2009. 9. 1. ~ 2010. 1. 31.)								
직역별 실무수습 2개월	직역별 실무수습 2개월	전문 분야 실무 수습 1개월	자율 학습 1개월	기록 작성 1개월	시험 2주	세 미나 2주	특 강 6주	수 료 여 형 1주	진 료 안 내 2주	자 율 학 습 2주	취 업 지 도 1 개 월

18

사법연수생 수습

◆ 기본실무 과목

과목	1, 2학기	4학기	특징
민사재판실무	5학점	4학점	▶ 반별 강의
형사재판실무	4학점	4학점	▶ 1, 2 학기 통합평가(1 학기 15%+2학기 75%+교수점수 10%)
검찰실무	4학점	4학점	▶ 교재 강의/사례연구/각종 법률 서면 작성 연습/모의재판
민사변호사실무	3학점	3학점	▶ 법률이론과 판례를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문제 해결에 접목
형사변호사실무	2학점	2학점	

19

사법연수생 수습

◆ 일반법률 과목

1학기	2학기	특징
보전소송	민사집행법	▶ 각 1학점/5단계 등급
부동산소송	손해배상소송	▶ 수사절차론 : 반별 강의
수사절차론		▶ 나머지 과목 : 7개 반 편성

20

사법연수생 수습

◆ 법조윤리 과목(각 1학점 총 3학점)

1학기	2학기	4학기	특징
법조론	법조윤리	법조책임	▶대강당특강+반별토론식 수업 ▶실제 사례 위주 교육 강화

◆ 법률영어 및 영미법 개론(각 1학점, 총 2학점)

1학기	2학기	특징
법률영어	영미법개론	▶7개 반(수준별) 편성 ▶원어민 강사/Only English ▶영미법 전반에 대한 소개

21

사법연수생 수습

◆ 전공과목

- 민사법, 기업법, 형사법, 공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사회경제법, 국제법 등 8개 계열 중 1개 선택
- 학기별 2과목(총 4과목, 각 1학점)

◆ 외국법 및 법학인접과목

- 2학기 1과목(1학점) 선택

22

사법연수생 수습

◆ 3학기 실무수습

구분	기간	기관	수습내용
법원 실무수습	2개월	각급 법원	법관 업무 소개 판결서 작성 훈련 조정 참여 국선변호활동
검찰 실무수습	2개월	각급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실제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 등 담당
변호사 실무수습	2개월	로펌 및 개인변호사사무소	의뢰인 상담 입회, 지도관의 법정 변론 참관 각종 소송서류 작성
전문분야 실무수습	1개월	국가기관, 언론사, 공 사기업, 국제기구 등 110여 개 기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심화 현장 학습

23

사법연수생 수습

◆ 평가

- 시험 유형 :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약술형,
모의기록에 따른 판결서 등 작성형
- in class & closed book & hand writing test 원칙
- 대부분 상대평가
- 과락 및 유급제도

24

사법연수생 수습

◆ 학점 및 등급제도

구분	등급비율	해당 과목
10단계	A+(7%), A0(8%), A-(10%), B+(15%), B0(20%), B-(15%), C+(9%) C0(7%), C-(5%), D(4%)	기본실무 5과목
5단계	A+(15%), A0(20%), A-(30%), B+(20%), B0(15%)	일반법률과목, 법조윤리과목
3단계	A+(30%), A0(50%), A-(20%)	전공과목, 외국법과목 교수지도학점

25

사법연수생 수습

◆ 최근 5년간 취업현황

구분	수료 인원	판사	검사	로펌	개업 고용	공공 기관	기업	사회 단체	군 복무	기타	미정
33기	966	112	77	177	346	36	46	16	147	9	
34기	957	96	85	178	311	58	55	18	146	10	
35기	895	91	90	172	209	63	43	11	170	46	
36기	975	89	88	273	204	74	46	4	180	16	1
37기	973	95	76	347	125	46	62	3	195	21	3

군복무후 취업하는 상황은 미포함

법관연수

◆ 연혁

- 법관연수 시작 : 1978년 7월 환경문제에 관한 법관세미나 등
- 경력별 연수의 확대 및 체계화(1992년)
- 전문분야 법관세미나 도입(2000년) ⇒ 세미나 결과를 재판실무편람으로 발간
- 분야별 연수 강화(2004년)
- 경력별 연수/분야별 연수/주제별 연수/세미나 체제 정립(2007년)
- 역할극 시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2007년)
- 2007년까지 총 326개 과정의 연수에 14,041명의 법관(예비판사 포함)이 참가

27

법관연수

◆ 법관연수의 목표

- 전문지식의 함양 및 재판실무능력의 배양
- 법관으로서의 품격 향상과 가치관의 정립
- 친목 도모 및 근무의욕 고취

28

법관연수

◆ 연도별 법관연수 시행결과

연도	연수회수	총 연수일수	연수인원
1978	4	30	152
1985	8	20	200
1990	5	26	178
1995	9	39	358
2000	18	98	779
2005	21	70	1,081
2007	36	275	1,726
2008(예정)	41	225	1,927

29

법관연수

◆ 경력별 연수

- 신임판사 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5년 단위로 징검다리 연수
(신임법관연수 ⇒ 초임단독연수 ⇒ 중견법관연수 ⇒ 초임지법부장연수)
-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 직책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전달 위주로
편성하고 연수 참가를 의무화
- 기타 고급관리자연수/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연수/시군법원판사연수

30

법관연수

◆ 분야별 연수

- 특정분야의 업무를 처음 맡게 된 법관을 대상으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실시하는 법관연수
- 종류 : 형사/행정/지적재산권/손해배상/의료/건설/상사
실무 법관연수
- 특수 분야별 연수 : 지원장 연수/외국어 연수

31

법관연수

◆ 주제별 연수

- 실무상 쟁점이 많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테마 중심의 법관연수
- 연수 주제는 법관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현안 위주로 매년 새롭게 선정
- 원내연수 : 사법정보화/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과 실무/소송상
감정의 쟁점과 개선방안/기업회계의 이해/기업인수·
합병(M&A) 관련 법률과 실무/재판의 심리학/조세소
송의 이론과 실무/조정·화해의 전략과 기술/공정거래
법의 이론과 실무
- 원외연수 : 법관의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국민과 사법/법과 경제
학의 만남

32

법관연수

◆ 세미나

- 각종 제도개선방안이나 특정 전문분야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발표와 토론
- 종류 : 가사재판장세미나/소년보호재판장세미나/바람직한 민사재판모델 정립을 위한 세미나/신 형사소송법의 시행·정착을 위한 세미나/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세미나/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전문분야 세미나/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33

법관연수

◆ 2008년 법관연수 일정 개요

연수 유형	연수인원 및 기간	세부 연수 주제
경력별 연수	11개 과정, 589명, 116일	법조경력신입판사연수 I, II, 신입판사연수, 군법무관 출신 신입판사연수, 지법부장판사연수 I, II, 초임단독판사연수 I, II, III, 중견법관연수, 전임시군법원판사연수
분야별 연수	10개 과정, 560명, 44일	지원장연수, 형사, 행정,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의료, 건설, 상사실무연수, 외국어연수 I, II
주제별 연수	12개 과정, 435명, 36일	원내연수 사법정보화 법관연수, 재개발, 재건축의 법률과 실무, 소송상 감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업회계의 이해, 기업인수 합병(M&A) 관련 법률과 실무, 재판의 심리학, 조세소송의 이론과 실무, 조정, 화해의 전략과 기술,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무
		원외연수 법관의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 국민과 사법, 법과 경제학의 만남
세미나	8개 과정, 343명, 25일	가사재판장세미나, 소년보호재판장세미나, 바람직한 민사재판모델 정립을 위한 세미나, 신 형사소송법의 시행·정착을 위한 세미나,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세미나, 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전문분야 세미나
합계		41개 과정, 1,927명, 221일

34

國家圖書館出版品預行編目資料

韓國醫師考試 OSCE 與司法考試制度/ 楊朝祥·
林光基·黃慶章 著. — 初版. — 臺北市：
考選部, 民 99. 03
面： 公分

ISBN 978-986-02-2833-5 (平裝)

1. 考試制度 2. 醫師 3. 司法人員 4. 韓國

574.324

99004995

書 名：韓國醫師考試 OSCE 與司法考試制度
編 印：考 選 部
作 者：楊朝祥·林光基·黃慶章
出版機關：考 選 部
地 址：台北市 116 文山區試院路一之一號
網 址：<http://www.moex.gov.tw>
電 話：(02)22369188 轉 3132
傳 真：(02)22367928
出版年月：九十九年三月

考選部出版品編號：MOEX-099-004(D-1)

GPN: 1009901086

ISBN: 978-986-02-2833-5 (平裝)